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전 철 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2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0.

발 의 자 : 전철규, 한상욱, 조기만,  
이충현, 신찬호, 박성호,  
강선영, 정재봉

### 1. 제안이유

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5월 25일로 정하고 있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일로 변경함(안 제4조 제1호)
- 나. 기존 11월 22일로 정하고 있던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11월 15일로 변경하고, 제2차 정례회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 제2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조부서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전단 중 “5월 25일”을 “6월 1일”로, “승인,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”를 “승인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1월 22일”을 “11월 15일”로, “심의·확정 및”을 “심의·확정,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p>항제2호 예산의 <u>심의·확정</u> 및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 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----- <u>심의·확정</u>, <u>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</u> <u>사무감사와</u> -----.</p>
--	--